

24

결재	담당	과장	이사	사장

완성검사현장명 :
설치주소:

승강기. 주차기 점검보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우편물 발송처

사업자번호 : 621-82-13875

우편번호 : 609-840

상 호 : 아동양육시설 성애원

주 소 :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41

성 명 : 김 문재

상 호 : 성애원

주 소 :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41

TEL. 051-582-4287

업태/종목 : 비영리 / 아동양육시설

** E-MAIL : 세금계산서 받을 이메일 주소 기재 요망

sungjaewon@nate.com

** 담당자명 : 세금계산서 담당자명 기재 요망

김문재

TEL. 051-582-4287

FAX. 051-517-4287

(株)東南엘리베이터서비스

본사 및 공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48(송정동)

TEL : 1544-5031(代), FAX : 070-4325-4299

E-mail : dnservice@naver.com

승강기. 주차기 점검 보수(保守)계약서



승강기 유지보수에 관하여 관리주체(위탁자)인 성애원 (이하 "갑"이라 한다)와 보수업체인 (주)동남엘리베이터서비스 대표이사 이영규(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승강기 및 주차기의 점검보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보수대상 및 보수료)

본 계약의 보수대상 승강기 및 주차기의 내역 및 보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대상 승강기 및 주차기 월보수료

종류 및 형식	규 격	대 수	월 보수료(원)	비 고
승강기	승강기	1대	99,000	부가가치세포함

2. 보수 계약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3. 월 보 수 료 : 일금구만구천원정 (부가가치세포함)

제2조(보수방법)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과 "을" 은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각 조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을" 은 모든 기술과 성의를 다하여 승강기 및 주차기(이하 승강기라 칭한다) 성능 유지와 안전운영에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제3조(점검방법 및 시간)

가. "을" 은 "갑" 의 승강기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 보수하되 각 기기의 청소 및 급유와 조정 기능점검 등을 행하여야 한다.

나. 점검은 "을"의 근무시간 내("을" 의 통상 근무일의 통상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의 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점검 등의 보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갑" 은 "을" 의 청구에 의해 추가 경비를 지급한다.

다. 승강기의 불시 고장 시는 "갑" 은 "을" 에게 신속히 전달하여야 하며 "을" 은 연락 받은 즉시 기술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라. "을" 은 승강기의 정기점검 또는 자체점검 후 그 결과를 자체점검표에 기록하여 "갑" 에게 사실을 자체점검 특기사항에 보고하여 " 갑"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즉시 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 4 조(유.무상보수 범위)

"을" 은 점검, 고장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부품에 대해서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그 밖의 부품의 교체 및 수리공사는 본 계약과 관계없이 별도로 유상 공급한다.

1. 오일류(권상기 기어오일 및 유압오일 제외)
2. 탄소브러시(Carbon Brush)
3. 가동 고정접점(Contact)
4. 션트리드 선(Shunt Lead)
5. 고정 카본(Carbon)
6. 각종 퓨즈(속단퓨즈 제외)
7. 각종 신호기용(형광등, 인테리어조명 제외)
8. 점검용 소모자재(볼트, 너트 등)
9. 형견

제 5 조(책임의 한계)

가."을" 은 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승강기의 운행에 지장이 있음을 발견하면 전조에 의거하여 "갑" 의 승인을 받아 적기적소에 공급 하여야 한다.

나."을"이 보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승강기의 사고와 "을"의 직원이 해당 작업 중 입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을" 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① 파업, 공장폐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되는 고장 기타 직간접 피해.
- ② "갑" 의 관리부주의 또는 사용부주의에 의한 사고.
- ③ "갑" 이 "을" 과 협의 없이 임의로 전기회로의 변경, 부품의 제거, 이설교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
- ④ 건물 자체의 하자나 기타 "을" 의 책임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⑤ 매월 "갑" 이 지급할 계약 승강기의 보수요금이 2개월 이상 지불이 지연 될 경우 체납 2개월후 "을" 은 일시 점검 보수를 중단할 수 있으며, 체납 이후 계약승강기에 대한 점검 보수 미비로 발생한 계약승강기의 사고에 대하여 "을" 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을"이 계약승강기를 점검한 후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체점검표 내 특기사항이 수리 또는 노후부품의 교체를 "갑"에게 요구하였으나 "갑"이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제 6 조(감독)

"갑" 이 지정한 운행관리자는 "을" 의 기술자가 보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7 조(해약 및 연장)

"갑" 은 계약중이라도 "을" 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일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약 통보하여야한다.

또한 계약기간 완료 전에 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에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약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 연장 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그 이후도 역시 같은 것으로 한다.

제 8 조(계약금액의 변동)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자재 또는 노무비 기타 물가변동으로 계약 금액에 증감이 필요한 경우 "갑" 과 "을" 의상의 하에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다.

제 9 조(보수로 지불방법)

"갑" 이 지불할 월정 보수료는 매월 당월 말까지 현금 또는 은행지출로 지불한다.

제 10 조(위약금)

"갑" 과 "을" 중 당사자의 일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중도 해지 할 경우 상대방에게 총 계약금액(월보수료 x 계약 개월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보상금으로 지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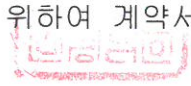
제 11 조(계약조항의 해석)

본 계약 및 관계법 조항의 해석에 있어 "갑" 은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되며 "갑", "을" 간의 해석차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갑", "을"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관련법규 및 일반 관례를 따르기로 한다.

제 12 조(하도급 동의 시)

"을"은 원활한 보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을"의 감독과 책임 하에 보수업 등록업체에 전 각호의 사항을 "갑"의 동의하에 하도급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계약하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 첨부서류 : 개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015년 / 월 / 일

“갑”

상호 : 아동영양사상 숭애원

주소 :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41

대표 : 김 문자

주민번호 : 710127-210549



“을”

상호 : (주)동남엘리베이터서비스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48(송정동)

대표 : 이 영 규



보수요금 구성내역

점검 비용항목	노 무 비	통상점검, 고장수리, 현장분해 및 조사, 사내검사 조정시간, 교통비
	직접경비	E/L보수 기술료, 여비 및 교통비, 기기 및 부름 소모품, 운반비, 현장안전대책비
	소모품비	콘넥터, 퓨즈, 서포트, 각종카본, 인디케이터램프, 점검용 오일
	제 경 비	고객용 각종 승강기 관리 자료, 잡비, 홍보제작비, 영업이익 및 기타경비
기타	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점검(월1회) 및 고장발생 시 수리 • 야간 및 휴일의 고장대기 • 정기검사(년1회)시 입회 및 사후조치 • 필요한 기술인력 및 설비를 보유하고 필요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보유

※특이사항

담당 :

TEL.

고 유 번 호 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지점)

고유번호 : 621-82-13875

단 체 명 : 아동양육시설 성애원

대표자 성명 : 김문정

법인등록번호 : 184232-00*****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1 (장전동)

교 부 사 유 : 신규

(유의사항)

-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4 년 11 월 07 일

금정 세무서장

